급용위원회	보 도 자 료					대한민국 대전환 하는국 판뉴딜
공용감독 왕	보도	2021.4.27.(화) 조	간	배포	2021.4.26.(월)	대성을 바꾸는 규제 역신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홍 성 기(02-2100-2630)		담 당 자		김 영 근 (02-2100	
	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 범 준(02-3145-5700)			· ^1	정 재 <i>싕</i> (02-3145	등 팀장 5-5697)

제 목 :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(3.25일) 한 달, 현장은 소비자 친화적 금융환경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

- 법 시행 초기 금융 영업현장의 혼선은 그동안 고착되었던 '거래편의 위주의 영업관행'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
- 금융당국과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하면서 법 시행 초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, 현재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(상품설명 등)을 마련 중입니다.
 - 붙임 1: 금융당국의 금융업계 현장 간담회 실시 경과
- 법 시행과 함께 만든 「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」은 대표적인 현장소통 채널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. (접수건수: 113건 / 처리건수: 58건(51.3%), '21.4.22.(목) 기준)
-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, 퇴직연금,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.
 - 참고: 별첨자료 "3차 FAQ 답변"
- 법 시행 후 중단되었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, 현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.
 - 불임 2: 권역별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사례
-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금융당국과 업계와의 협력 체계도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.

1. 거래편의 중심 영업관행의 개선

□ **법 시행 후 영업현장**에서는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,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인해 **다소 혼선**이 있었습니다.

【법 시행 후 영업현장 애로사항 주요사례(출처: 언론보도 등)】

- ① 판매직원의 설명이 길어져 예금 가입에 30분, 펀드 가입에 1시간 소요
 - 설명 시 녹취로 인해 판매직원이나 소비자 모두가 불편
- ② 투자자성향 평가를 하루에 1번 밖에 못하고,
 - 과거와 달리 평가결과 부적합한 상품에 대한 계약이 제한됨
- ③ 소비자에 제공해야할 계약서류가 많아져 불필요한 비용 발생
- □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약 3주간(3.23~4.9) 총 11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습니다.(☞ 붙임1)
 - 최근 혼선의 원인이, 강화된 제재와 함께 금소법에 이관된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(설명의무, 적합성 원칙 등)를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진단하고,
 -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잡는데 필요한 "가이드라인" 마련 등을 협의했습니다.

[영업현장 애로사항의 주요원인 및 대용방향]

- □ 금융소비자보호법은 **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회사가** 소비자에게 **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**하여 거래의사 결정을 돕고
 - o 소비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설명받은 상품에 대해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판매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목적임
- □ 상품 설명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**설명해야 할 사항을 축소·생략** 한다면 추후 **금융회사는** 결국 **불완전판매 책임**을 질 수 있으며
 - 설명시간이 부담스러워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판매절차를 빨리 진행하게 한다면 소비자는 투자손실에 대해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어 배상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
- → **상품설명에 소요되는 시간**이 과거에 비해 다소 길더라도 충실하게 설명 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**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**이 됨

① 상품설명 과정에서의 어려움

- (원인) 상품설명을 판매자·소비자 모두 형식적 절차로만 인식
- (대응)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설명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

② 부적합한 상품판매 제한에 따른 소비자 민원

- (원인)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에도 불구, 부적합확인서 등을 받고 부적합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해오던 관행에 기인
- (대응) 부적합한 상품 권유금지 원칙은 유지하되, 투자자성향 평가 1일 1회 제한 등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음에도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관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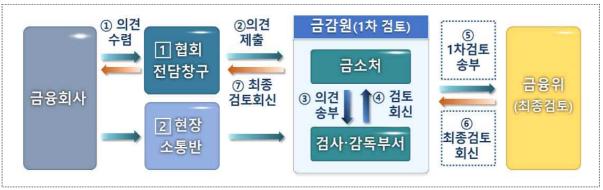
③ 많은 계약서류로 인한 불편

- (원인) 법정서류가 아닌 서류(투자성향 평가결과서 등)도 관행적으로 제공 하고, 다양한 전자적 제공방법에 대한 이해가 불확실
- (대응)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서류는 제공토록 하는 원칙은 유지하되, 그 외 불편사항은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해소

2.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정착

□ 금융위·금감원과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권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3.31일부터 공동으로 "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"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<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>



- □ 현장의견은 **4.22일 기준**으로 총 **113건**이 접수되었으며, 그 중 **58건**(51.8%)이 회신되었습니다.
 - **질의내용의 상당수**는 **연대보증**, **퇴직연금**, **내부통제기준**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**실무처리 방법**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.
 - o 참고로 법 시행초기 논란이 되었던 설명의무 이행, 투자자성향 평가,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애로사항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습니다.

[현장의견 주요 회신내용]

- Q1. 금소법상 법인대출 시 연대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, '건설 시공사' 의 연대보증이 가능한지?
- A. 건설 시공사는 **감독규정상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허용**되는 "프로 젝트금융 대출 시 해당 사업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법인"에 해당
- Q2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서는 판매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하도록 하는데 이는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충돌 아닌지?
- A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상의 '상품제시'로서 판매자가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실무상 모든 가입자에 동일한 상품목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금소법상 '권유'로 보기 어려움
- Q3.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'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전담임원 선임'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임원이 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 外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?
- A. 감독규정에서는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므로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추가 가능

3. 현장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확산

□ 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으며, 특히 키오스크, STM(Smart Teller Machine)은 모두 정상화되었습니다.

[은행권 비대면 금융서비스 재개현황]

일시중단 서비스 건수	4월 재개 서비스	5월 이후 재개예정 서비스*	
38건	30건	8건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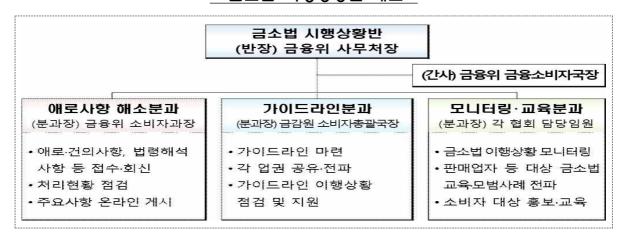
^{*} 전산개발 중으로 대부분 5월중 재개 예정

□ 금융권의 **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경쟁적으로 확산**되고 있습니다.

- < 금융권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주요사례 🕼 붙임2) > 💳

- # (A 증권사) 모바일 거래 고객이 고위험 상품 가입 전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영상을 제작
- # (B 카드사)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관련 내용에 대해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"고객 전담 카운셀러 제도" 운영
- # (C 생명보험) 금소법상 6대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"금융상품 완전판매 가이드라인" 마련
- □ 권역별 금융권 협회*는 금년 9.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"표준내부통제기준"을 마련 중입니다.
 - * 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생명·손해보험협회, 여신금융협회, 저축은행중앙회, 신협중앙회
 - o **과도한 실적 경쟁**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하여 **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**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(6월 완료예정)
 - ➡ 앞으로도 금융위・금감원은 "금소법 시행상황반"을 통해 금소법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・지원해나가겠습니다.

< 금소법 시행상황반 개요>





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 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

붙임 1

금융당국의 금융업계 현장 간담회 실시 경과

권역	행사(일자)	주요 참석자	금소법 관련 주요 후속조치	
<u>全</u> 권역	금융위원장 협회장 간담회 ('21.3.26.)	→ 은행연합회 → 금융투자협회 → 생명보험협회 → 손해보험협회 → 여신금융협회 → 저축은행중앙회 → 신협중앙회	■영업창구 판매직원이 금소법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협회에서 금소법 주요내용 요약 리플렛 표준안 마련·배포 (완료) ■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운영	
은행	금융위원장 CEO 간담회 ('21.4.1.) 금감원 금소처장 은행권 간담회 ('21.3.23.)	 사중은행 (국민/농협/신한/ 우리/SC/하나 등) 지방은행(부산/전북) 기업은행 	■투자자성향 평가 관련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	
금융 투자	금융위원장 CEO 간담회 ('21.4.5.) 금감원 금소처장 증권사 간담회 ('21.3.30.)	→ 증권사 (미래에셋/삼성/신 한/한국투자/키움 /한화/DB/NH/KB 등)	■설명의무 이행 효율화 및 설명서 작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	
보험	금융위원장 ('21.4.6.) 금감원 금소처장 생보사 간담회 ('21.3.23.) 금감원 금소처장 손보사 간담회 ('21.3.26.)	→ 생명보험사 (교보/라이나/ 미래에셋/삼성 등) → 손해보험사 (삼성/한화/흥국 /KB 등)	■광고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■보험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부담 경감방안 마련 추진	
여전/ 저축 은행/ 신협	금융위원장 (CEO 간담회 ('21.4.9.) 금감원 금소처장 카드·캐피탈 간담회 ('21.4.6.) 금감원 금소처장 저축은행 간담회 ('21.4.9.)	→ 카드사 (국민/삼성/신한 등) → 캐피탈 (롯데/우리금융/ 현대 등) → 저축은행 (대신/하나/SBI 등) → 신협중앙회	■금소법 시행 상황반 출범(4.15일) ■상호금융 내 소비자보호 규제 사각 지대 해소 추진 계속	

붙임 2 권역별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사례

권역	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주요 사례
은행	 ■(A 은행) AI 금융상담시스템 구축 ● 투자성 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정확한 상품 설명 및 금소법이 정한 판매절차 준수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■(B 은행) 투자성 상품 일시 판매정지 제도 시행 ● 자체 미스터리 쇼핑 결과 판매절차 준수 2회 연속 미흡에 해당하는 영업점은 1개월 판매정지를 적용하고, 해당 영업점 직원에 온라인 교육 실시
금융투자	■(A 증권사) 모바일 거래 고객이 고위험 상품 가입 전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영상을 제작 ■(B 증권사) 금융그룹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및 고객중심 경영 선포식 시행 ■(C 증권사) 금소법 관련 규정상 의무가 없음(자산총액 5조원 미만) 에도 소비자보호 총괄 임원을 자체 선임
보험	■(A 생명보험) 금소법상 6대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"금융상품 완전판매 가이드라인" 마련 ■(생명보험사 전체) 계약 후 완전판매 모니터링(해피콜) 강화 ■(손해보험사 전체)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범위를 보험대리점의 블로그, 재무설계 방송 등까지 확대
카드사	■(A 카드사) 금소법 전담 카운셀러 제도 운영 -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관련 내용에 대해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고객 전담 카운슬러인 '금융소비자 지킴이' 선임 ■(B 카드사) 카드 회원에게 '금소법 관련 FAQ' e메일 제공